

# 예 산 총 칙

201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| 879,515,402 | 26,385,462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| 731,489,729 | 21,944,692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| 148,025,673 | 4,440,770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| 45,949,611  | 1,378,488 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| 9,455,432   | 283,663  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| 36,494,179  | 1,094,825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| 102,076,062 | 3,062,282 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| 15,035,899  | 451,077   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| 3,227,870   | 96,836     |
|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| 3,962,828   | 118,885   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1,040,000   | 31,200     |
|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     | 113,972     | 3,419      |
|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      | 1,750,420   | 52,513     |
| 교통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| 5,593,875   | 167,816   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| 58,393,489  | 1,751,805  |
|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        | 12,957,709  | 388,731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 세입·세출 예산 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 채무부담행위조서 " 와 같다. (해당없음)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 계속비사업조서 " 와 같다. (해당없음)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 명시이월사업조서 " 와 같다. (해당없음)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106,76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